**스마트폰/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스마트폰 혹은 도청 기기를 사용한 비디오/영화의 제작과 더불어 ‘사전 동의’와 사생활 문제가 대두되고있습니다. 이 정보지는 예술가 혹은 예술기관들이 숨겨둔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화제작을 계획할 시 알아야 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 서문**

휴대폰을 이용한 단편영화나 비디오 등, 영상물의 제작은 매우 보편화된 추세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상물의 제작 기기가 휴대폰 인지 ‘전통적인’ 도구 (카메라 등) 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동일한 법이 고려 되어야 하지만 그 중 에서도 스마트폰 혹은 감시 장치를 이용한 영상물의 제작과 관련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기기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녹화될 수 있다는 점 에 기인 합니다.

**(2) 감시 및 도청장치**

호주는 각 주와 관할 지역마다 감시 및 도청 장치(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포함한)에 관한 사생활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호주의 모든 주와 영토 내 에서 적용되는 도청 장치(몰래 카메라/ 스마트폰)를 이용,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지않은 개인적 대화의 녹음 및 녹화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은 위에 명시된 도청 장치 등 을 사용한, 인가를 받지 않은 기록물의 출판/개제 또한 대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주와 영토 마다 세부사항이 갈리지만 사람들의 대화를 녹화하거나/ 대화가 녹음된 푸티지를 비디오에 삽입하는 영화제작자들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녹음/녹화된 모든 사람들의 명백한 동의를 받는 것 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도청 기기 법s8 2007(NSW) 에 따라, 비디오카메라 등 시각적 레코딩 기기는 사유지에 대한 침해를 포함할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동 법령s 7(1)조 에 따라 사적인 대화를 도청 하는 기기의 소지, 사용, 설치는 기기 사용자의 대화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동 법령s 4(3)조 에 따르면 시각 이미지의 기록/송달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기기는 모두 ‘도청 기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디오카메라 또한 도청 기기로 분류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 주 의 도청기기법령 1999(Vic) s7조 는 ‘음성레코딩을 포함한, 촬영자가 포함되지 않은 ‘사적 행위’ 에 대한 시각 기록물’ 을 금지하고있는데 따라서 오디오가 포함되지않은 순수시각기록기기 에 대한 규제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동 법령s 3 조항에 따라, 건물 바깥, 혹은 타인의 시선이 있을 법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규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s3 조 에 명명된 ‘건물’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며, ‘구조물’ 또한 이에 포함됨을 밝히는 바입니다. 실내 공공장소 등에서 촬영할 경우 이 법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레코딩 기기로 녹음/촬영된 음성/시각적 정보의 공유 혹은 출판은 동 법령 S11 조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 의 경우와 같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에서도 사적 행위와 대화를 담은 시각/음성 정보의 녹화/녹음은도청기기법 1998 (WA) 의 ss 5(1) and 6(1) 조항에 따라 금지 되어있습니다. 동 법령 s 3조항에 언급된 ‘사적 행위’ 와 ‘사적 대화’ 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구성원 중 한 명 이라도 대화/ 행위의 내용이 구성원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드러낸 상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또한 구성원들이 그들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대화가 합리적으로 타인에게 노출 될 수 있는 상황일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야외활동의 녹화는 위 법령에 의거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나 촬영 환경의 본질과 그 환경이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 될 수 있는가 의 여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법권과 같이, 행위자의 동의 없이 녹음된 사적 행위/대화의 출판은 동 법령 s9조에 따라 금지되고있습니다.

퀸즈랜드

퀸즈랜드 주는 오디오/시각적 레코딩기기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지만 the Schedule to the *Criminal Code 1988 (Qld) 의*ss 227A–C 는 스틸/필름카메라를 포함한 시각적 레코딩기기에 관한 일부 제한적 규정을 담고있습니다.227A 절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적공간에서의 사람에 대한 녹화, 혹은 사적 행위를 하는 장면의 녹화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상기 녹화 자료의 유포 또한227B 절에 따라 금지되고있습니다. 하지만 207A절에 명시된 ‘사적 행위’ 의 정의는 목욕, 배변, 내밀한 성적 행위 혹은 행위자가 나체일 경우로 매우 제한적 입니다. 그러므로 영화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촬영 시, 이러한 장면이 포함될 위험을 안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선테리토리

노선테리토리 주 에서 사적 행위나 대화를 고의로 녹음/녹화하는 행위는 도청 기기 법2007 (NT)에 따라 위법합니다. 사적 행위/ 대화의 정의는 서부오스트레일리아의 법안과 유사하며 포괄적입니다. 사적 행위/대화의 시청각적 녹음 물 의 공유와 출판은 동 법령 s15조에 따라 위법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위와 유사하게, ACT주 에서는 도청기기법1992(ACT)에 따라 오디오 녹음 기기만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필름카메라 혹은 유사 비디오 레코딩 기기 등 오디오 녹음 기능을 겸비한 시각적 녹화 기기들 또한 ‘도청’기기의 정의 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적 대화의 고의적 녹취는 동법령 s4조에 의해 금지되고있으며 그러한 녹음의 결과물의 배포/출판 또한 ss5 와 6 조에 의해 금지되고있습니다. 사적대화녹음물의 단순 소지 또한 s7조에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ACT주에서의 ‘사적 대화’ 의 정의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와 노선 테리토리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하지만 ‘대화 구성원의 암시된/표현된 동의’에 기반하고있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리한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진행 할 경우, 누군가가 엿들을 수 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유사합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감시 및 도청 기기 법1972(SA) 의 s4조에 따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도청 기기를 이용, 대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않은 사적 대화를 엿듣거나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도청 기기’ 의 정의 또한 광범위하며 시각적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를 포함하지 않는 시각적 기록 기기 는 경찰 영장에 관한 논의 에서만 고려됩니다.

대화 구성원 전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적인 대화를 담은 녹음 물 의 공유 및 출판은동법령 s5조에 따라 금지되고있습니다. 해당 금지령은 녹화/녹음 기록이 타인에 의해 제작된 것 이라고 해도 사적 대화의 녹음 기록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일괄 포함하고있습니다.

타즈마니아

다른 주 들 과 달리, 타즈마니아 주 에서는 도청 기기 법1991(Tas)에 따라 도청 기기의 ‘사용’ 만이 제한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도청 기기’의 정의는 동 법령 s3에 따라, 뉴사우스 웨일즈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음성 녹음이 가능한 비디오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 s5조에 따라 상기 명시된 기기들을 사용, 사적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적 대화’의 정의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안과 유사하며, 따라서 장소 자체보다 정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적 대화의 녹음 물 을 공유, 출판하는 행위 또한 동 법령 s9조에 의해 금지되고있습니다

**(3) 기밀정보**

‘비밀 누설’ 혹은 기밀문서의 오용- 개인정보를 포함한- 또한 스마트폰 혹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필름 제작 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일 것 입니다. 혹 누군가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도중 필름에 찍혔다면 -장소의 공공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자신을 찍은 사람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까페나 공원에서 자신들의 대화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사업상 거래를 의논하던 사업가들은 비밀누설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 법 정보지 참고: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을 시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호 하는 방법

**(4) ‘해피슬래핑’ (공공장소에서의 범죄행위의 촬영)**

**\*해피슬래핑: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나 놀라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유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

휴대폰은 종종 범죄자/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기록하는 수단이 되곤 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찍힌 범죄영상들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례 또한 빈번합니다. 이러한 일은 상위 논의된 도청기기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더욱 심각한 형법상의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푸티지는 경찰의 기소를 위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도 있으며, 만약 해당 불법행위의 기록물이 성폭행이나 성적 행위를 담고있을 경우, 촬영자와 유포자 역시 음란물 유통 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2007년 프랑스에서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촬영, 유포한 이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술 법 지 ‘art+law2007년 참고] 핸드폰 카메라는 이러한 촬영의 주요 수단이었으며 이 법안에서 전문기자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경 없는 기자들은 프랑스 당국의 청소년범죄퇴치의 필요성 (2005년 발생한 자동차 방화, 파리와 기타 도시들에서 일어난 폭동 참조)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해피슬래핑’에 의 처벌에 있어 일반인과 기자의 구별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날의 호주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안이 존재하지않으나 해외에서 촬영하는 영화제작자들은 이와 관련해 현지 법을 조사, 준수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 호주에서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사람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5) 범죄현장의 촬영**

사우스 웨일즈를 비롯한 많은 주들에서는 경찰이 특정 장소가 범죄현장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지시하거나 그 장소에 대한 차후 출입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NSW 경찰-미디어 규정은 언론(인/사)이(가) 범죄 현장 바깥에서 경찰관의 법적 지시를 준수하며 행동 하는 한 경찰이 언론인/(사)이(가) 범죄현장의 사진을 찍는 일을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오스트레일리아예술센터 경찰법 정보지에 따르면 개인이 그러한 범죄현장을 찍는 일은-예를 들어 안티테러리즘법령에 따라-불쾌한 행동으로 간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자로 각 주는 각자의 경찰 미디어 규정을 공표하지 않으며 공표할 경우 이는 언론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6) 사생활 보호**

호주에는 개인의 이름,별명, 닮은 꼴, 이미지 등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면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통제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개인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사생활보호 법안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와 기관들이 개인이미지를 출판/공표 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을1988(Cth)을 위반하는 상황에 한해, 개인의 이미지는 ‘개인정보’의 구성 요소로 포함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예술법 정보지: 인가받지않은 이미지의 사용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써 호주내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없지만, ABC 대 레나 게임 미츠 (2001) 사례에서 고등법원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미래에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은 또한 호주 법이 ‘괴롭힘’ 혹은 ‘스토킹’( 형사사건아래 분류되는 경우 제외) 을 신체,재산,명예, 등이 손상되어 보상 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ABC 대 레나’ 사례는 지방법원들의 판결에 고려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법원은 호주 법이 해당 행위를 사생활 침해로 간주할 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법원들은 사생활 침해를 소송 가능한 위법행위로 보는 일 은 보편적 원칙들에 준거해 피해를 복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타 법원들은 사생활 침해의 경우 영국 ‘보안 유지의 의무’ 의 발전과 와 개인정보의 상관관계를 살피며 법적 대응의 바탕으로 삼고있습니다.

예술 법 정보지 ‘사생활과 사적 부문’ 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7) 동의**

상기 명시된 법적 공방들은 대체로 기록물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이는 법적 대리인/부모의 동의로 대신 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가 카메라에 찍힐 것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공연자의 권리’에 입각해 배우들로부터 그들의 행위를 당신의 기록물에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기록물에의 출연에 관한 문서화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주변에서 촬영이 진행되고있음을 알고 있는 일반인들도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 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표현된 동의를 받는 것 입니다.

숨겨진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촬영된 사람일 경우 어떤 형식이든 암묵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화제작자가 단순 통화를 하고있거나 사진을 찍고있다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 이죠. 최선의 행동은 영화에 출연하는 이 의 문서화된 동의서를 얻는 일 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출연자가 촬영에 동의한다는 말을 하는 것 을 영상 기록물로 남기십시오.

예술 법 정보지 참조. 영화 로케이션 발표. 예술 법 은 상업적 영화제작자들에게 적합한 규범을 제시하고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예술 법 센터 인포메이션지 참조- 저작권 침해

© 오스트레일리아 예술 법 센터2016 6